

'94. 공유재산관리계획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무상사용 및 대부허가	계	1	192.07	25,929			1	192.07	25,929	
	토지									
	건물	1	192.07	25,929			1	192.07	25,929	
	기타									

'94.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허가기간	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	비고
	종 별	소 재 지	지목, 구조	수 량				
1	행정재산	염리동 83-3	건물/평스라브	192.07	25,929	'94.1.1.~ '96.12.3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항	

관리계획(무상대부)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m ²)	대부신청자 주소 및 성명	비고
염리동 83-3	건물	192.07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장	대부 기간 (3년)

2. 재산의 현황

○ 위치 : 승문중·고 윗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염리동 청사임.

○ 사용목적 : 구 염리동청사 (2층)중 1층을 염산파출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안녕과 질서를 유지토록 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재방재정법 제82조, 마포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4. 사용료 : 면제(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 심사보고서

1993.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 11. 18. 송윤석 의원의 10인

나. 회부일자 : 1993. 11. 18.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 (93.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송윤석 의원)

가. 제출이유

○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주택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가 현조례에 묶여 1주택에 1양수기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급수사용료 배분문제등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조(급수의 구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건의한다.

제4조(급수의 구분)

-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단, 다가구주택등 여러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양수기를 증설할 수 있다.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4. 토론요지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기타사항 :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 채택 관계기관에 개정 촉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

의안 번호	239
----------	-----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8일
발의자 : 송윤석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주택의 밀집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에 서울특별시 급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므로 해서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가 현조례에 묶여 1주택에 1양수기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급수사용료 배분문제등 대단히 불편을 초래하는 바,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의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조(급수의 구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급수의 구분)

-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단, 다가구주택등 여러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양수기를 증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건의(안)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날로 대도시의 주택이 모자라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에서도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신축만 권장할 뿐 기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급수문제등이 아직도 현조례에 묶여 1주택에 1양수기밖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에게 급수사용료 배분문제등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조제1호에 보면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가구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양수기는 1개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등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유독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은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개별급수를 받고 있지 못하는 바,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급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급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을 “1. 전용급수 : 1호 또는 1개소에 대한 급수로서 전용하는 것. 단, 다가구주택등 여러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양수기를 증설할 수 있다.”로 개정을 건의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